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24
----------	-----

2016. 12. 1.(목)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임순묵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6년 11월 22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3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2월 1일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임순묵 의원)

가.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법령 정비(안 제4조제2항)
- 나.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경형)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도록 변경하고 조문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 조례는 법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과 맞추기 위해 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 524 호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관리기준)”을“(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의”를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관리기준”을 “세부관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1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관리 기준)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불티가 생기는 설비(그라비아 인쇄기·기모기 및 솜틀기계 등과 같이 조작을 할 때에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p> <p>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기</p> <p>② 제1항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가연물의 제거 및 안전조치와 소화기구의 준비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생략)</p> <p>② 과태료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p>	<p>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삭 제></p> <p>② 제1항에 따른 ----- ----- ----- ----- -----.</p> <p>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 세부관리기준--.</p> <p>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3조제3항 관련)

(이하 생략)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3조제1항 관련)

(이하 생략)

관 계 법 령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1.5.30.]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2011.11.30.>